

「평창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김광성 의원
- 제안일자 : 2024. 3. 5.
- 회부일자 : 2024. 3. 13.
- 상정일자 : 2024. 3. 14.

2. 제안이유

- 평창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관내 가업승계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농촌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농촌 발전을 장려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·시행(안 제4조)
- 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(안 제5조)
 -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, 농업 관련 창업자금 지원, 소프트웨어 지원 등
- 지원 제한 등(안 제7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 제4조에서 지자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력 육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은 농업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후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농업을 이끌어 나갈 가업승계 농업인을 지원하여 농촌인구의 유출을 막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미래 농업 인재로 양성하고자 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5조(사업)에서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함.
 - ※ 지원사업: ①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, ② 농업 창업 자금 지원, ③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, ④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
- 안 제7조(지원제한 등)는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 또는 제외하고, 규제 사유 발생 시 지원을 취소하고 금액을 회수하도록 규정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관내 가업승계 농업인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
본 조례안은 지자체 고유사무를 규정하는 것이고 입법 취지가
합당하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입안 가능한 것으로
판단됨.